

학술대회 개최 경비 지원 내규

제정 2002. 04. 18.
제1차 개정 2007. 10. 29.

제1조(목적) 국내(국제) 학술대회 개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연구력 확산 및 연구능력을 진흥하고자 한다.

제2조(지원대상) 우리대학 학과(부), 대학 및 연구소에서 주관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서 단독 주관 또는 학회와 공동주관 모두 지원한다. 다만, 교내 연구소 공동 주최 학술행사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지원규모)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 학술대회
주제발표 또는 토론참가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이어야 하며 참가 인원이 50명 이상인 우리 학교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250만원
2. 전국규모 학술대회
전국규모 학회가 주최하고 토론 또는 주제발표 등과 같은 학술행사가 있으며 참가인원이 50명 이상인 우리학교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150만원
3. 전국규모 학회의 지역지회 또는 분회
가. 전국규모 학회의 지역지회 또는 분회가 주최하고 토론 또는 주제발표 등과 같은 학술행사가 있으며, 참가인원이 50명 이상인 우리학교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50만원
나. 전국규모 학회의 지역지회 또는 분회는 전국규모 학회의 소속으로서 학회운영상 지역적인 지회 또는 분회에서 운영되는 학회를 말한다.

제4조(지원금의 조정) 총장은 매학년초 연구지원 간접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개최 지원경비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① 학회개최가 확정된 후 신청서식에 의거 학회의 공문 및 일정표와 초청장 또는 안내문을 교무처 교무과에 학술대회 개최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② 교무처장은 학회의 규모 및 우리대학에서 개최하는 것을 확인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학회개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0.29)

제6조(결과보고) 학술대회 개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결과보고서(학술행사 간행물 및 프로그램) 및 정산서를 교무처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부칙

- (1)(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4월18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지원간접경비사용내규에 의하여 지원된 학술행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연구지원간접경비사용내규에 의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33호, 2007.10.30)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